
「2025 프로젝트 상생」
IMPACT IR 경연대회 교육 및 컨설팅 운영
과업 내용서

사업기간	2025. 10. ~ 12. 31.
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

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
CHUNGNAM SOCIAL ECONOMY CENTER

I 과업 개요

1. 일반사항

- 가. 사업명 : IMPACT IR 경연대회 교육 및 컨설팅 운영
- 나. 과업기간: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

2. 과업 목적

- 가. 임팩트투자 시장의 확산과 사회적경제 전반의 투자 활성화 분위기 조성
- 나. 참여팀들의 IR 사업계획서 작성 역량 강화와 사업계획서 개발
- 다. 참여팀들의 임팩트 금융 매칭 포인트 공유와 이해도 제고 및 연계 기회 마련
- 라. 프로젝트 상생 및 IMPACT IR 경연대회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
3. 주요과업

- 가. 경연대회 홍보/모집/선발 진행
- 나. IMPACT IR 교육 및 컨설팅 운영
- 다. 서류/예선/본선/결선 심사 진행 및 운영
- 라. 12개 수상 업체의 상금 지급, 경연 결과보고 및 성과 추적

II 세부사항

1. 과업 대상

- 1) 모집대상: 임팩트투자 유치에 관심이 있는 충남 소재의 개인 또는 팀(기업)
- 2) 모집자격: 충남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, 예비 창업자
- 3) 모집 대상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 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진행

2. 세부 과업 내용

- 가. 경연대회 홍보/모집/선발 진행
 - 1)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진입을 희망하는 창업팀, 일반기업 모집
 - 2) 모집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진행
- 나. IMPACT IR 교육 및 컨설팅 운영
 - 1) 임팩트 투자 이해, 사업계획서 작성, IR 노하우 등 3회 이상 교육 운영
 - 2) 교육 과정 중 팀별 개별 컨설팅 진행(멘토 운영)

3) 이전 시즌 수상기업 네트워킹, 미션 프로그램 일부 진행

다. 서류/예선/본선/결선 심사 진행 및 운영

1) 서류/예선/본선/결선 심사위원 섭외 및 운영(임팩트 투자사, 기타 관련 영역)

2) 임팩트 투자사 및 관련 기관과 사업 연계 진행 및 네트워킹

라. 12개 수상 업체의 상금 지급, 경연 결과보고 및 성과 추적

1) 선정된 12개 기업 상금 지급(총 30,000천원)

2) 진행 내용 결과보고서 작성

3) 본선 진출기업 성과 추적(향후 1년)

3. 추진 일정

내용	월												
	9	10			11			12			2026		
홍보물 제작 및 기획													
모집													
서류심사													
예선심사													
교육 및 컨설팅													
본선 심사(집계)													
결선 심사 및 시상													
알럼나이													
지원금 지급													
결과 보고													
성과 추적													

4. 과업목표

1) 정성적 목표

- 우수기업 발굴로 충남 사회적경제 전반의 임팩트 투자 기반 조성
- 임팩트 투자 연계 및 투자사례 발굴
- 선·후배 기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시너지 창출

2) 정량적 목표

- 모집 : 본선 진출 인원의 2배 수 이상 모집
- IMPACT IR 교육 및 컨설팅 각 3회 이상
- 교육 및 컨설팅 수수료 90% 이상
- IR 사업 계획 12개 개발
- 임팩트 투자 연계 3회 이상

5. 최종 산출물

구분	내용
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 세부 과업별 결과/산출 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안, 교육 사진, 참여자 명단 - 온/오프라인 홍보물, 홍보 내역 등 - 성과 달성 내역 및 기업별 성과 추적 (결과 보고 및 사업 종료 후 1년간, 요청 시) - 상금 배분 지급 증빙 및 지출 내역서 • 결과보고서 1식(전자파일) 및 결과보고서 제본 6부

Ⅲ 과업 수행 지침

1. 과업수행 일반사항

- 본 과업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명하는 담당자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.
- 본 과업을 수행 중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빠진 사항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상호 협의를 통해 개선보완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
-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본 과업의 참여 인력이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미달일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과업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.
- 과업 참여 인력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사전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서면 제출하여야 하고, 기존 참여인력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동의를 얻은 후 교체할 수 있다.
-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업체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.
 - ①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업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
 - ②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빠지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 - ③ 사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

2. 과업 보고

- 본 과업의 관리를 위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보고 체계 구성 및 기술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상충할 경우, 과업 담당자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과업수행업체는 각 보고 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의해 제기된 미비점 또는 요구사항을 즉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업체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게 과업 시작과 완료 시점에 업무협의 및 보고하여야 하고, 과업 종료 후 14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산출물

- 본 과업의 최종 산출물은 과업내용서에 명기한 대로 한다.
-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된 제반 자료 및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으며,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납품 완료 시 산출 자료를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.

4.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

- 과업수행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 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.
-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업체는 필요시 대표자·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에 따라 제공된 자료, 연구 및 조사자료를 비롯해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, 과업수행 중 과실로 말미암은 일체 사고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. 만약 과업을 위해 외부 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제출한다.
- 과업수행업체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으며 사업완료 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다.

5. 계약의 변경·해지

- 계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해서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당초 방침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계약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① 과업내용이 당초계획과 현저하게 달라져 담당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 계약체결 후 중대한 착오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 - ③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시행 범위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
 - ④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.
 - ① 과업수행이 계획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
 - ②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업체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거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신뢰성을 상실하거나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때
 - ③ 과업수행 중 계약조건, 센터의 승인 사항, 제출서류, 각종 보고서 등이 사실과 다를 때
 - ④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과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 - ⑤ 계약 해지 시 과업 이관으로 인한 인수업체의 원본 및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이의 없이 즉시 전달해야 한다.
- 과업 수행자는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 계약(과업)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
6. 기타사항

-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, 과업은 동 지역과 관련하여 규정된 상위 법령과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,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과업 기간 중 필요시 추가·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 조정하여 이를 과업 수행에 포함한다.
-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과업수행업체가 과업수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과업수행업체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검수를 득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1.3 / 1000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한다.
-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이 과업수행업체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다른 경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해석을 따른다.